

대전지방법원 2024. 9. 11 선고 2023나214434(본소), 2023나214458(반소) 판결
[공사대금 · 기계수거등 청구의 소(반소)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4. 9. 11 선고 2023나214434(본소), 2023나214458(반소) 판결
대전지방법원 2023. 6. 22 선고 2022가단113939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

담당변호사 유은상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

담당변호사 이승진

변론종결 2024. 7. 10.

판결선고 2024. 9. 11.

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. 6. 22. 선고 2022가단113939(본소), 2022가단 113946(반소)

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 29,0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4. 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: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각 수거하고, 피고에게 46,921,4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본소: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9,0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4. 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: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14쪽 4행의 “16,870,046원”을 “16,871,046원”으로 고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오명희, 판사 손정현, 판사 권 검

목 록

(기계 표시)

번호	제품명	제조사	모델	고유번호
1				
2				

